

의안번호	2213588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5.12.30.
추계번호	25B554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6. “퇴직급여제도”란 <u>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u>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u>아니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수 있음</u> (제1항)	의무·재량규정
3	안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u>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u>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u>설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u> (제1항)	의무규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적립하여야 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퇴직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 적립 현황을 알려야 함(제3항 신설)	의무규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연 1회 이상 신고하여야 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4	안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u>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u>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제1항)	의무·재량규정
5	안 제11조(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	<u>제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 근로</u>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른 처리)	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그 지급 방법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와 제4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함(제2항 신설)	
6	안 제4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항)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의무규정
7	안 제49조(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함(제1항)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5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제3항)	의무규정
8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2조제6호, 제4조, 제8조, 제11조, 제24조, 제48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함 1.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8년 1월 1일 3.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30년 1월 1일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부칙 제2조 (퇴직급여제도 조기도입 지원)	국가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퇴직금제도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재정 지원을 실시하거나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의 대상,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10	안 부칙 제3조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한 적용례) 신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의 사용자는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2035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여야 함.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제2항)	의무규정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3항) 1.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은 가입기간으로 포함하여야 함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근로자가 전환 전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가입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 3.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 – 개정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안 제2조제6호, 제4조)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하면서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적립의무는 2027년 상시 100인 이상, 2028년 상시 5인 이상, 2030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하는(부칙 제1조 단서) 내용으로 국가 재정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정안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퇴직금의 적립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연 1회 이상 신고하도록 규정하는(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내용 등으로,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재정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	안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4	안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8	안 부칙 제1조(시행일)		
10	안 부칙 제3조(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한 적용례)		
5	안 제11조(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 등에 따른 처리)	—	• 미대상 – 개정안은 퇴직급여제도 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퇴직급여제도 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재정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1)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7	안 제49조(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6	안 제48조(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비용 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9	안 부칙 제2조(퇴직급여제도 조기 도입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재정 지원을 실시하거나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는 사용자의 규모와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및 내용, 조세 감면에 대한 조세 관계 법령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됨
 - 그러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는 사용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및 조세감면 관련 규정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